

1. 개정이유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수배출시설 등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토록 하고,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 수수료 기준과 납부방법을 정하며,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실시의 주체 변경(안 제31조의2제1항)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국립생태원이 실시토록 변경함.

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기준 정비(안 제52조제2항)

불가피한 사유(기계장치의 돌발사고, 단전·단수 등)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출기한(48시간 이내) 산정 시 제외토록 함.

다. 관계기관 검토사항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추가(안 제84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 의견청취 사항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항목을 추가함

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 조치사항 및 개선명령 인용조문 정비
(안 제87조, 제88조)

물환정보전법 개정('21.4.13,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규정(안 제106조제1항, 별지 제23호의3 서식, 별지 제23호의5 서식)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를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9천원),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4천원)으로 함.

바. 행정처분 적용 차수기준 정비(별표14의3, 별표22)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적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사.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 정비(별표20의2)

혼합반응 기준 초과 시 유해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상변경 여부 확인주기(반기 1회 이상)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영 제81조제3항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7항제2호”를 “법 제32조제8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배수관거설치도면”을 “배수관 설치도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이내”를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1호의2) 중 “관리대책시행계획”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으로 한다.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 해제

제87조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확인하여야”를 “조사·확인해야”로 한다.
제9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제91조의2제6항 중 “검사기관의 관리기준”을 “검사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제2호의3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제10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의3 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0의2 제1호나목 중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를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여 폭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그 밖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성상의 변경이 없음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수탁폐수의 성상이 변경되었거나 성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해야 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가)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1)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근거법령란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목 1)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 1)나)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위반사항 2)의 근거법령란 “법 제60조제5항·제6항”을 “법 제60조제7항·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 중 “조업정지일로”를 “조업정지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5호 중 “란에는 ⑦”를 “란에는 ⑥”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본정보	사업종류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m ²	사용 면적 m ²	수중 용적 m ³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kg/일		
				먹이횟수 회/일		
	관리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m ²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m ³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수수료 없음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번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제 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종류		(주생산물:)					
면허(승인)기간				사업시작(예정)일			
신고사항	양식어장	시설면적	m ²		면허(허가·신고)면적		m ²
		수중용적	m ³		호소·하천 및 해양의 명칭		
	골프장	총사업장의 면적	m ²		홀수		홀
		조정지	개소		(총 저장능력: m ³)		
	그 밖의 시설	시설명			시설규모(수)		m ³ ()
		약품사용량	kg/일	용수량	m ³ /일	폐수량	m ³ /일
	수질오염저감 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등록 신청서 [] 등록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신청 : 10일 등록말소 : 즉시
신청인	상 호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등록말소)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2조의3제1항 에
[] 제52조의5제2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 등록
[] 등록말소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말소 신청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	등록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등록말소 :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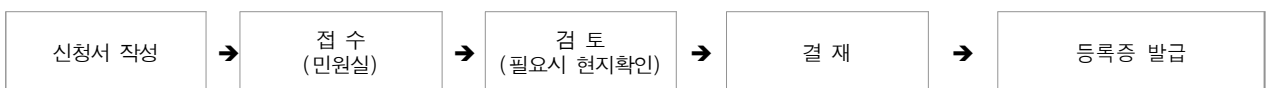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u>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 <u>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영 제81조제3항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u> ---- <u>고려해야</u>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u>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u>)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5조(<u>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u>) 법 제32조제8항제2호----- ----- ----- ----- -----.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 ----- ----- ----- ----- ----- -----

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6. (생략)

② (생략)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생략)

제출해야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배수관 설치도면 -----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 2 (생략)

3. 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③ · ④ (생략)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분석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신설>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 4. (생략)

② -----

-----.

1. · 2 (생략)

3. -----

-----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관리 지역 지정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관리 지역 해제

4.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관리 대책시행계획---

5. ~ 7.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u>법 제60조제4항</u>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u>설치하여야</u>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u>법 제60조제5항</u>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u>정하여야</u>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u>제출하여야</u>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u>조사·확인하여야</u> 한다.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략) ③ <u>제1항에 따른 신청서</u>를 제출	까지와 같음)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u>법 제60조제6항</u>----- ----- ----- ----- <u>설치</u> <u>해야</u> ----- -----.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 ----- <u>법 제60조제7항</u>----- ----- ----- <u>정해</u> <u>야</u> ----. ② ----- ----- ----- --- <u>제출해야</u> -----. ③ ----- ----- ----- <u>조사</u> <u>· 확인해야</u> ----.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른 신청서</u>-----
---	--

<신 설>

3. ~ 6.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신 설>

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

-----.

1. -----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제2호의3은 제외한다)--

1의2.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3. (생 략)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생 략) 3.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3.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